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과징금 처분 시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 근거 마련 등 〉
■ 임의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348호)

2025. 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과징금 처분 시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 근거 마련 등	3

I. 제안경위

2024년 11월 7일 임의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및 인증서류 위조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됨에 따라 입법을 통하여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였음. 1년간 두 차례에 걸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하여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50배 가량 상향하였음.

그런데 과징금이 기업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대폭 강화되었음에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대한 고려없이 기존의 단순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현행 규정은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정상적인 자동차를 판매했음에도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나 계산착오, 내용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과징금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사항과 동일한 과징을 부과받는 체계를 갖고 있음.

또한 대부분의 법률에서는 조사에 소요되는 행정 비용 감축 등을 위해 위반자가 자진 시정하거나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과징금을

감경 또는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법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행정적 비효율성이 높음.

이에 구체적인 위반행위 정도 및 타당성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위반행위의 자진신고, 조사의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6조제2항 및 제56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과징금 처분 시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징금 기준을 정할 때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② 제작차에 대한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자가 그 위반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등에는 그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항 신설 및 제56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u><신설></u>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정도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u> -----. ③ <u>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2분의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u> <u>1.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u>

현행	개정안
③ (생략)	2. 그밖에 위반행위의 사유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첫째, 현행법 제48조1)에서는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는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이후 인증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하도록 함.

이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현행법 제56조2)에 따라 그 자동

- 1) **법 제48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 ②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요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자동차제작자는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이하 “변경보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제작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3.>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보고를 한 자동차에 인증·변경인증·변경보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변경보고, 인증의 면제·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2) **법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차제작자에 대하여 배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현행법 시행령 제52조³⁾ 및 [별표 12]에 따르면, 인증 또는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은 배출가스⁴⁾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따라 가중

-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3.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3) **시행령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4) **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1.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 가. 일산화탄소
 - 나. 탄화수소
 - 다. 질소산화물
 - 라. 알데히드
 - 마.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 바. 암모니아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 가. 일산화탄소
 - 나. 탄화수소
 - 다. 질소산화물
 - 라. 매연
 - 마. 입자상물질
 - 바. 암모니아

부과계수를 1.0 또는 0.3으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그런데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내에서 기존에 비하여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는 그 위반행위의 경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가중부과계수(1.0)를 적용받고 있음.

[과징금의 부과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2])]

1. 매출액 산정방법

법 제56조에서 “매출액”이란 그 자동차의 최초 제작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총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과거에 위반경력에 있는 자동차 제작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 이후에 제작된 자동차의 매출액으로 한다.

2. 가중부과계수

위반행위의 종류 및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는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의 종류	가중부과계수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가. 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	1.0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아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1.0	1.0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다만, 중요사항 외의 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인증 또는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는 제외한다.	1.0	0.3

3. 과징금 산정방법

매출액 × 5/100 × 가중부과계수

[제작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1. 휘발유 또는 가스자동차
가. ~ 사. (생 략)
아. 2016년 1월 1일 이후

차 종		일산화 탄 소	질 소 산화물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및 질소산화물	탄 화 수 소		포름알 데히드	측정방법
					블로바이 가스	증발가스		
경자동차, 승용·화물차 소형 승용·화물차 중형 승용·화물차 중형 승용·화물차 중형	기준 1	2.61g/km 이하	—	0.100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	0.087g/km 이하	—	—	—	US06 모드
		2.0g/km 이하	—	0.062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2	1.31g/km 이하	—	0.078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	0.075g/km 이하	—	—	—	US06 모드
		2.0g/km 이하	—	0.044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3	1.06g/km 이하	—	0.044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	0.075g/km 이하	—	—	—	US06 모드
		2.0g/km 이하	—	0.044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4	1.06g/km 이하	—	0.031g/km 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 모드
		5.97g/km 이하	—	0.075g/km 이하	—	—	—	US 06 모드
		2.0g/km 이하	—	0.044g/km 이하	—	—	—	SC03 모드
	기준 5	0.625g/km 이하	—	0.019g/km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모 드
		5.97g/km 이하	—	0.031g/km이하	—	—	—	US06모드

		2.0g/km 이하	—	0.012g/km이하	—	—	—	SC03모드
	기준 6	0.625g/km 이하	—	0.0125g/km이하	0g/1 주행	0.35g/테스트 이하	0.0025 g/km 이하	CVS-75모 드
		5.97g/km 이하	—	0.031g/km이하	—	—	—	US06모드
		2.0g/km 이하	—	0.012g/km이하	—	—	—	SC03모드
	기준 7	0g/km 이하	—	0g/km 이하	0g/1 주행	—	0g/km 이하	CVS-75 모드
대형 승용·화물자동차, 초대형 승용·화물자동차		4.0g/kWh 이하	0.40g/kW h 이하	0.14g/kWh 이하	0g/1 주행	—	—	WHTC 모드

2. ~ 6. (생 략)

자료: 제작차배출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일부 발췌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를 함께 고려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⁵⁾에서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자·수입업자가 미달성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2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⁶⁾에서는 과징금 감경 시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둘째, 2007년 과징금 처분 조항 도입 당시 과징금의 상한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2016년 폭스바겐이 전 세계에 판매한 경유차 1,100만대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하는 사건⁷⁾이 발생한 이후 2차례 개정⁸⁾을 통해 과징금의 상한이 500억원으로 상향되었음.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2(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내부준법제도(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상황에 대하여 평가(이하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신청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폭스바겐 조작사건 궁금증 풀어보기, 환경부, 2016.

- 8)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3874호, 2016.1.27. 일부개정)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4487호, 2016.12.27. 일부개정) 제5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56조(과징금 처분) 주요 개정 연혁]

공포일자	시행일	개정 주요내용
‘16.1.27	‘17.1.28	o 과징금 상한액 상향 (현행: 10억원 → 개정: 100억원)
‘16.12.27	‘17.12.28	o 과징금 상한액 상향 (현행: 100억원 → 개정: 500억원) o 과징금 부과율 상향 (기존: 매출액의 100분의 3 → 100분의 5)

그런데 배출가스허용기준⁹⁾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한 단순 행정상 실수로 인증 또는 변경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과징금과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미인증),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과징금이 동일한 수준으로 산정되는 것은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아니하여 업계에 부담이 된다는 자동차 업계의 의견¹⁰⁾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인증·변경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미한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어 합리적인 제재가 가능하고, 기업의

9) 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0)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2)에서도 위반 사항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4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의결에 협조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1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과징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위반 부과금액”이라 한다)과 오염물질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이하 “정화비용”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반부과금액을 10억원 이내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불법배출(제2조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지정폐기물

라.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오수 및 분뇨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 중 각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천500밀리그램 이상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에 부착된 측정기기를 조작하거나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거나 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기록 또는 제출하면서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 중 어느 하나를 배출한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9조제1항, 제44조제10항

나.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5제4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제1항, 제46조의2제1항

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제3항, 제18조제3항,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3. ~ 5.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시정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536